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3036 |

제출년월일 : 2017.08.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사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의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 확대

기존	변경	비고
비영리법인 학교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개정조례안 : 불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7. 7. 21. ~ 2017. 8. 9.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불임4
- 방침결정문 : 불임5

< 불임 1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을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2항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여성가족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출산지원계장 김연수
	담당자 성명·전화	한영아 (2606)

< 불임 2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다만, <u>시장이</u>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u> 2. <u>「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 설></u>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u>재 위탁</u>할 수 있다 ③ <u>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제2조(설치 및 명칭) ① ----- 다만, <u>“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u> 2. <u>「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u> 3. <u>「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u> 4.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에 따른 공익법인</u> 5.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u> 6. <u>「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u> 7. <u>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u>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u>재위탁</u>할 수 있다 ③ <u>제1항과 2항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